

환경부고시 제2003-84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완충저류시설설치산업단지지정

1. 대상지역 : 구미2·3, 진주상평 산업단지

◇ 산업단지: 구미2·3

- 완충저류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경북 칠곡군 설적면 중리 491-2~3, 494, 495-1~3, 495-5~6, 868-9, 868-13번지 일원

◇ 산업단지: 진주상평

- 완충저류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1-8 및 73-1번지 일원

2. 설치시기 :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 2003-63호

환경부공고 제2003-32호(2003. 3. 12)입법예고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추가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공고 제2003-32호(2003. 3. 12)로 입법예고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추가하여 정화조청소업의 청소용 차량으로 이동식탈수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새로운 기술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중 정화조청소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이동식탈수차량을 추가하여 동 차량으로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국립환경연구원공고 제 2003-31호

소음도표시권고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 및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관한규정 제9조(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표시권고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음표시권고내역(다음페이지 표 참조)

비고

1. 소음도는 기계로부터 7.5m에서 측정된 것임.
2. 위의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8에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됨으로 동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소음표시권고내역

번	호	년 월일	기계명 및 모델번호	제작사(국적)	소음도(dBA)		비고(최대출력)
					권고소음	발생소음	
압쇄기	2003-1	2003. 4. 7.	SRC-80/SRC80-001	(주)수산중공업(한국)	76	72.0	134ps
압쇄기	2003-2	2003. 4. 7.	SRC-70/SRC70-001	(주)수산중공업(한국)	76	72.3	134ps
압쇄기	2003-1	2003. 4. 7.	SRC-50/SRC50-001	(주)수산중공업(한국)	73	68.2	54ps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3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당진군 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03년 5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진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당진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1. 공동처리구역

- 가. 구분: 당진 한진농공단지
- 나.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산41-2번지 일원
 - 면적: 143,697㎡

2. 기타문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당진군 경제향만과(041-350-3482)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당진 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시설규모

- 시설용량: 1,500m³/일(1단계: 1,000m³/일, 2단계: 500m³/일)
- 설치면적: 4,449m²(산업단지면적: 143,697m²)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2003년 10월 ~ 2007년 12월
 - 1단계: 2003년 10월 ~ 2004년 12월
 - 2단계: 2007년 2월 ~ 2007년 12월
- 사업지역: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산41-2번지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4,519백만원
 - 1단계: 3,913백만원
 - 2단계: 60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446.8백만원(1단계: 366.3백만원)

마. 예상원인자 범위

- 당진 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및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할 경우 그지역의 시장·군수

바. 재원조달방법

전액 원인가 부담(시설설치비는 일부 구고보조)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당진군 경제항만과 (041-350-3482)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2962)

나. 열람기간: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및 전라남도 나주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환경청고시 제2003-15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발안지방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화성발안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분: 화성발안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일원

- 면적: 1,845,700㎡

2. 기타문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등은 경인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및 화성시 환경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18호

나주동수·오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
변경(폐지)지정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공동처리구역 변경(폐지)

처리장명	구분	대상지역	면적(㎡)	비고
나주동수·오량 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변경전 변경후	동수농공단지 오량농공단지 폐지	209,300 261,146 -	공동처리구역을 나주하수종 말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으 로 지정(남처리구역, 6분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타문의

공동처리구역 변경(폐지)에 대한 관련서류는 영산강유역환경

경인지방환경청고시 제2003-2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화성발안지

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화성발안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규모

- 시설용량: 5,000m³/일
- 설치면적: 14,726m²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2003년 5월 ~ 2005년 4월
- 사업지역: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13,674백만원(1차 11,094, 2차 2,580)
- 연간유지관리비: 2,072,179천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화성발안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바. 자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자원조달방법: 국고 50%, 원인가부담 50%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화성시 환경행정과(031-369-2235)

나. 열람기간: 30일 이상

환경부공고 제2003-6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위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정하고, 그 밖에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정하는 한편, 2006년 이후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한정하는 등 첨가제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사업장의 종 구분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되는 경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을 정함.

라.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밀검사수수료 산정시 필요한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정함.

마. 시도지사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정함.

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을 정함.

3. 기타문의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47, 팩스:02-504-9208)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 2003 - 1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 1997-3호, 1997.9.8)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관찰물질중개정

[별표1]의 화학물질의 명칭란 중 고유번호 97-1-139의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개정고시로 새로이 유독물로 지정된 화합물을 제조, 판매,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공고 제2003 - 69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지정고시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일부지역의 권역을 당초 지정취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서 II 권역으로 조정함.

나.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중 미원천수계는 I 권역에서 II 권역으로 조정하고, 이천리중 벽계천수계는 II 권역에서 I 권역으로 조정함.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52, 팩스:02-504-9209)

환경부공고 제2003 - 70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지정고시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팔당·대청호 상수원 주변에 대하여 오염원 입지제한 강화등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정비하여 동 지역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외지인의 건축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인 거주요건을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규제하고 실제거주여부를 이장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보강


나. 건축물을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는 형태로의 변경을 제한하고 건축연면적 800m²이상의 창고는 입지 제한

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되, 생활폐기물·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꼭 필요한 처리시설은 입지제한 완화

라. 실질적인 시설증설 효과가 있는 하천내 토지점용허가 및 농약사용 우려가 있는 천연잔디골프장의 입지제한을 강화하고,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광물 및 석재 채취등의 행위를 제한

마. 난개발 억제를 위해 오수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제한 범위는 늘리되, 주민의 공공복리시설 확대 및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원필지에 대한 규제수준 조정, 법정분가된 비숙의 건축제한 완화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정비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52, 팩스: 02-504-9209) 

6월
실무 교육

최신 고도처리 및 질소·인 처리 실무기술

문의 : 연합회 (02)-852-2291